

1. 개정이유

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유지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유지보수 범위 조정

도시계획정보체계 대민서비스를 토지이음으로 흡수·통합하고, 개발 행위허가 등 토지이용 인·허가를 통합·처리하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 대민서비스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유지보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

나. 재검토기한 설정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 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

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,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,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, 관련 연계·지원시스템”을 “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,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, 관련 연계·지원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계획, 개발행위허가 등”을 “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계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7호는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1조의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조에”를 “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대민서비스”를 “공공데이터 제공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11조, 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 중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”을 “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	제3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"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"란 국토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<u>인터넷 홈페이지,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,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, 관련 연계·지원시스템</u>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,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, 관련 연계·지원시스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2. "도시·군계획정보"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국토계획법"이라 한다)에서 정의한 <u>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계획,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에서 관리하는 정보</u> 를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계획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3. ~ 6. (생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7. " <u>대민서비스</u> "란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시계획정	<삭 제>

보서비스를 말한다.

제4조(표준시스템 구축) ① (생략)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자료교환체계를 운영하거나 도시·군계획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료교환체계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 수립이나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해 자료교환체계로 연계 받은 정보를 대민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 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) ①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개발행위허가

제4조(표준시스템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 -----

--.

제9조(자료교환체계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 공공데이터 제공 -----
---.

제10조 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5. (생 략) 제11조(대민 서비스) ①~⑥(생 략) 제12조(개발행위허가 민원관리) ①~③ (생 략) 제17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(대통령훈령 334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제17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 이 훈령에 대하여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